

[별표 3] <개정 2006.5.30>

중점검토항목·의견수렴방법·환경성검토협의회구성 등에
관하여 별도로 고시할 수 있는 행정계획의 범위
(제8조제6항·제8조의2제7항 및 제8조의3제7항관련)

구 분	행정계획의 종류
가. 도시의 개발	(1) 「유통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른 유통산업발전 기본계획 (2) 「유통산업발전법」 제6조에 따른 유통산업발전 시행계획
나. 도로의 건설	「도로법」 제23조의2에 따른 도로정비기본계획
다. 수자원의 개발	(1)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댐건설장기계획 (2) 「농어촌정비법」 제4조에 따른 농어촌정비종합 계획 (3) 「농어촌정비법」 제6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정 비계획
라. 철도의 건설	「철도건설법」 제4조에 따른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마. 하천의 이용 및 개발	(1) 「소하천정비법」 제6조에 따른 소하천정비종합 계획 (2) 「소하천정비법」 제7조에 따른 소하천정비중기 계획
바. 관광단지의 개발	(1) 「관광진흥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관광개발기 본계획 (2) 「관광진흥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권역별관광 개발계획
사. 특정지역의 개발	「농어촌정비법」 제31조의2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 업개발계획
아. 폐기물처리시설의 설 치	「폐기물관리법」 제8조에 따른 폐기물처리기본계획